-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검보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창섭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778호

다. 제출일자 : 2015. 10. 30.

라. 회부일자 : 2015. 11. 4.

2. 제안사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바, 관련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관리위탁 절차와 현행 조례상의 위탁 연장 횟수를 일치시킴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라. 입법예고

○ 기 간: 2015. 11. 11 ~ 11. 18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) 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교통문화교육원의 위탁 연장 횟수를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』의 규정에 따라 1회로 제한 하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운영현황

- 위 치 : 관악구 남현1길 38-10(남현동 소재)

- 규 모 : 대지 1,650.1 m², 건물 5,222 m² (지하 1층, 지상 5층)

- 시설내용 : 강당, 강의실, 사우나실, 헬스클럽, 식당, 어학실 등

- 수 탁 자 : (사)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복지협회

- 수탁기간 : 2013.12.01~2016.11.30(3년)1)

- 위탁내용 : 운수종사자 교육, 교육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· 운영.

운수종사자 등의 교육·취미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

- 이용대상 : 운수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

나. 검토의견

○ 동 개정안은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²⁾ 실시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및 지역주민에게 사우나, 헬스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³⁾하고 있는 교통문화교육원의 위탁 연장 횟수와 관련하여

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』제19조제2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시 갱신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⁴⁾을 반영코자 하는 것임

^{1) (}사)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복지협회 컨소시엄이 2004. 08. 23일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재계약 (2007. 09. 01일), 재계약(2010. 09. 01일), 계약연장(2013. 09. 01일)의 방법으로 운영하였음

²⁾ 근거 :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제25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³⁾ 근거 : 『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』제4조 및 제9조

⁴⁾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- 현행 조례에 연장 횟수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해석에 있어 명확성을 기여할 수 있고,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필요할 것임
- 한편,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⁵⁾, 서울시도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동의 의견을 제출하였음⁶⁾

⁵⁾ 지방규제혁신과-2835(2015.7.17)

⁶⁾ 택시물류과-31831(2015.11.16.)